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43

2009년 2월 24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년 2월 16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이정곤)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평생학습관 지정절차를 정함(안 제4조).
   ○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평생학습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업무 일부가 시・도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관됨으로써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임.
   ○ 다만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행조례의 시행규칙과 폐기가 필요한 관련조례(「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의 통합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가. 평생학습관 지정절차 및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안 제4조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3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대해 대표성을 고려한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지정기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정 평생학습관의 선정과 지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평생학습관 선정의 투명성과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평생학습관의 선정과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 지정절차는 동 시행규칙 제3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취소)를 통합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지정신청), 안 제4조제4항(지정서교부),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협의회"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함.
   ○ 위원회 명칭의 변경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가 종전의 시・도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평생

교육협의회가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평생교육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동 조례안에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과 조례의 통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2006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내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이 구축되어져 왔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망 관계자의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경우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 협력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5조제2항의 경우 "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실무협의회의 모호한 목적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 운영시 발생하는 여비나 수당 등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실무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 있더라도 협의회의 운영방침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현행조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는 동 조례안에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10조에 명시되었음. 6개 조항에 걸쳐있는 현행조례의 내용을 동 조례안에서는 1개 조항에 전부 포함함으로써 일부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 안 제10조제5항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능, 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서로 다른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의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준용하게 될 경우, 안 제8조제1호에는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개별 평생학습관에 설치되는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안 제8조제3호의 "지역사회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으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서로 설치목적이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한 동 조례안의 규정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 평생학습협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평생학습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에 설치하는 실무협의회의 기본운영방침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의 "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를 "그 운영에 관해 필요

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5항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안 제8조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무관한 평생학습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제8조제1호의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나, 애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동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동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포함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에서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 수당 등과 관련하여, 동 조항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한 “위원회”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약칭으로 동 위원회에 대해서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제2항 중 “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로 수정함.

○ 안 제8조제1호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 안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